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3. . . (제 회)	

5 · 18 민 주 유 공 자 예 우 및
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5·18민주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5·18민주유공자증 또는 5·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·통합하고,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·운영, 재발급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5·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

(안 제6조의2 신설)

- 5·18민주유공자나 그 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현행 5·18민주유공자증 또는 5·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·통합하도록 함.(안 제6조의2제1항)
-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진위확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·운영, 재발급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 및 반납 등 관리 근거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(안 제6조의2제2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공카드 30만장 구입예산 15억원
편성확보(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7개 보훈관계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상자 포함)

다. 합 의 : 관계기관 협의 이전임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5·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)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및 진위 확인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,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

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52조제3항 중 “5·18민주유공자증 또는 5·18민주유공자유족증을”을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제3호 중 “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증, 5·18민주유공자 유족증”을 “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5·18민주유공자증 및 5·18민주유공자 유족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5·18민주유공자증 및 5·18민주유공자 유족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6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“5·18민주유공자증”을 각각 “국가보훈등록증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(등록 등) ① ~ ⑤ (생략)	제6조(등록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5·18민주유공자증 또는 5·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.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5·18민주유공자 유족증을 발급한다. ⑦ 국가보훈처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 <신설>	<삭제> <삭제> 제6조의2(5·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)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

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 대해서는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 이 경우 선순위 유족이 5·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·재발급 및 진위 확인, 발급대상자 본인 확인, 국가보훈등록증의 반납 등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국가보훈처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52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①

제52조(고궁 등의 이용 지원) ①

• ② (생 략)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<u>5·18민주유공자증 또는 5·18민주유공자유족증을</u>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 제60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(제10호부터 제12호까지, 제14호, 제15호, 제18호 및 제19호는 제외한다)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하고,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, 제18호 및 제19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(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)에게 위임한다. 다만, 제주특별자치	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가보훈등록증</u> ----- ----- -----. 제60조(권한 등의 위임·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

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」 제345조에 따라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. 1. · 2. (생략) 3. <u>제6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증, 5·18민 주유공자 유족증 및 확인서 발급</u> 4. ~ 46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6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 록증</u> ----- ----- -- 4. ~ 46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442